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2.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육현창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24. 체결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4.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7500호로 경료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¹⁾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아래 표 '우선수익자'란 기재 각 금융기관들을 아래 표 '부동산의 주소'란 기재 각 호수별 우선수익자로 하는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7498, 7499, 7500, 7501호로 각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각 신탁계약의 유형,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부동산의 주소 (별지 목록 중 건물번호만을 표시)	신탁의 유형	우선수익자	등기접수번호	관련 증거
1	D호	담보신탁	E조합	제7500호	을6
2	F호				
3	G호		H조합익산지점	제7498호	을13-1
4	I호				
5	J호		K조합	제7501호	을2

1) 이 사건 소가 2018. 11. 7. 제기되어 2년 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정리 및 증거를 확보할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1,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회 변론기일은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무려 1년이 경과한 다음 진행되었음에도 원고 측 준비서면은 제출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하나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유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총 4개이고, 신탁등기 역시 4번에 걸쳐 별도의 접수번호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서 신탁계약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별지 부동산 목록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신탁계약 전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잘못 지정되어 있는데다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기 역시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관할 등기소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로 해석하되, 청구취지 기재 자체로 '접수 제7500호로 경료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그 범위를 넘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6	L호				
7	M호				
8	N호		O조합 지점	나운동 제7499호	을12-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11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는 P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수탁하는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신탁계약은 장래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일부로서 수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7500호로 마친 신탁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2) 피고는 원고와 C, Q 사이에 어떠한 채권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고, E조합 등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들이 C에게 금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C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반환채권을 담보하

기 위하여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각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원고의 C에 대한 양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C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라거나 각 신탁계약에 의하여 C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C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²⁾

나. 가사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탁계약의 수익자들이 선의인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을 제3, 4, 7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들인 E조합, H조합 익산지점, K조합, O조합 나운동지점(이하 '수익자들'이라고만 한다)으로서는 C이 P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 내지 각 신탁계약이 C 내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익자들은 늦어도 2018. 7. 6.경부터 C에 대한 대출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C의 수입, 재산, 채무 등 신용상태, 이자부담 능력, 대출상환 계획 등에 대한 대출심사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제대로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② 수익자들은 위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공사를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받는 등 C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공사 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지, C의 채권자들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수익자들이 C의 P에 대한 채무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수익자들이 C에게 대출한 금액과 각 신탁계약상 정해진 수익권증서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게다가 수익자들은 모두 S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담보가 상실되어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에게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각 신탁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와 각 신탁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 F호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지 영

판사 이 원 식

판사 이디모테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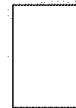
순창군 [] [] 동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79.376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순창군 [] 대 9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00분의 41.3072

2. 1동의 건물의 표시

순창군 [] [] 동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79.376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순창군 [] 대 9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00분의 41.3072

3. 1동의 건물의 표시

순창군 [] [] 동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62.578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순창군 [] 대 9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00분의 32.5655



4. 1동의 건물의 표시

0 순창군 [] [] 동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69.471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순창군 [] 대 9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00분의 36.1526

5. 1동의 건물의 표시

순창군 [] [] 동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79.376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순창군 [] 대 9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00분의 41.3072

6. 1동의 건물의 표시

순창군 [] [] 동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79.376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순창군 [] 대 9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00분의 41.3072

7. 1동의 건물의 표시

순창군 [] [] 동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62.578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순창군 [] 대 9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00분의 32.5655

8. 1동의 건물의 표시

순창군 [] [] 동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69.471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순창군 [] 대 9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00분의 36.1526

이상.

(끝.)